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805 발의연월일: 2020. 8. 7.

발 의 자:정희용·송언석·김병욱

김정재・태영호・윤재옥

김영식 · 김용판 · 정진석

이 용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전 매출액이 4천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 세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를 면제하고 실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대신 업종별 부가 가치율을 적용하여 납세액을 경감 하는 간이과세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간이과제제도의 적용 기준금액은 1999년 이후 현재까지 연매출액 4천800만원으로 머물고 있어 물가 상승 및 최저임금 상승 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인한 인건비 부담,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한 급격한 경제 침체로 영세사업자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간이과세제도 적용 기준금액을 4천800만원에서 9천900만원으로 인상하여 1999년도 당시 기준금액의 실질 가치와 비슷한 수준으로하여, 개인사업자의 조세 부담을 완화와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61조제1항).

법률 제 호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가치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4천800만원"을 "9천9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6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하여 간이과세를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제61조(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①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	
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하며,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의 합계액이	
<u>4천800만원</u> 이상 같은 금액의	<u> 9천900만원</u>
1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이	
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	
사업자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하	
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	
4장부터 제6장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보지 아니한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